

# 함양군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업무협약서

함양군과 현대엔지니어링(주)(이하 '각 기관' 이라고 한다)는 함양군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·보급을 통한 함양군민의 전기자동차 사용 편의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기본방침)

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약 내용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
## 제3조 (협약 당사자의 책무)

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력한다.

1. 함양군: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관련 행정지원 등
2. 현대엔지니어링(주):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 등

- 설치장소: 함양군 일원(공공시설 위주)
- 설치대수: 총 68기(급속-100kw/20기, 완속7kw/48기)  
※ 충전기 설치대수를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설치비용: 약 14억원(전액)  
※ 충전수익금은 현대엔지니어링(주)에 귀속, 유지관리는 최소10년 ~ 최장20년(친환경자동차법)
- 설치기간: 협약일로부터 ~ 6개월 내

## 제4조 (협약 사항내용)

1. 함양군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국유 및 공유재산 임대는 『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1조의3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(주)에게 공유자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, 임대기간 만료 시 각 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.
2. 현대엔지니어링(주)는 함양군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·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며, 충전요금은 환경부 공용충전기 요금수준으로 한다.
3. 현대엔지니어링(주)는 함양군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·운영 관련하여 민원 발생 시 적극 처리하고, 이용객들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 충전기 교체 등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.

4. 함양군 공공시설의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사항 변동 시 당사자 간 사전 협의한다.

## 제5조 (자료의 제공 등)

각 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협약내용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규정에 의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.

## 제6조 (자료의 이용 및 비밀유지)

각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정보 제공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, 상대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,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
## 제7조 (해석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,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따른다.

## 제8조 (효력)

1. 본 협약서는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일방이 협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자동으로 연장된다.
2. 제1호에 따른 협약의 효력기간 중 각 기관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3. 이 협약에 의하여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상대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서는 협약기간 종료 후라도 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책임이 있다.

각 기관은 이 업무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4월 7일

 현대엔지니어링

대표이사 홍현성

재  
권근환



함양군

군수 진병영

진병영